



제316회 정례회
2012. 12. 13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양희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11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응급처치 미흡으로 응급실 도착 전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 지속 발생.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 확대

<응급실 이용자 수>

구분	2009년	2010년	2011년
충청북도	357,968명 (2,582명)	334,880명 (2,502명)	313,236명 (2,768명)
전국	10,814,628명 (42,110명)	10,232,016명 (41,441명)	10,327,028명 (40,355명)

※ ()안은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
 ※ 자료출처 : 2011응급의료 통계연보

- 특히,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이 필요한 심장질환 사망자가 전체 사망률의 9.7%(‘11)를 차지하고 있으며, 충북도 증가 추세로,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도민 홍보, 사용 교육 및 관리의 내실화 필요.
 ※ 충북 심장질환 사망자 : 750명(‘08)⇒894명(‘09)⇒867명(‘10)⇒949명(‘11)
- 따라서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즉각적 응급처치를 통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

하고자 “자동제세동기”의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설치 장소 홍보 및 활용 교육, 관리를 규정하고, 연차적 응급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·시행하되, 시행 계획에 자동제세동기 설치, 홍보, 관리, 교육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확대 포함(안 제3조)
- 정기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고 교육대상을 법령에 따른 대상자 외에 “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”과 “교육을 원하는 도민”까지 확대(안 제5조)
- “자동제세동기” 등의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적극적 홍보를 적시하여 활용도 제고 유인(안 제6조)
- “자동제세동기” 의무설치 기관 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점검 의무화 및 도차원의 관리실태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적시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 (안 제7조)
- 기존의 “충청북도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통합함(안 제8조 ~ 제13조)
 - “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폐지 (안 부칙 제2조)
-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자격 조문 변경 (안 제8,9조)
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(시행일 2012.8.5)에 따라, 응급의

료위원회 심의사항 변경(안 제8조)

- 동법 시행령 개정(2012. 8.3)에 따라, 위원자격 변경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○ 동 조례안은 매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여 응급 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즉각적 응급처치를 통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“자동제세동기”의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설치 장소 홍보 및 활용 교육, 관리 등을 규정하는 등 응급처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자의 감소를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추진경과

- 조례 제정 필요성 관련 집행부서 간담회 및 자료수집(8.22~27)

- 1차 전문가 간담회(8.28)

• 참석인원 : 6명(정책복지위원, 학계 전문가, 도 보건정책과 등)

- 조례안 초안 작성(8.29 ~ 9.12)

- 2차 전문가 간담회(9.11)

• 참석인원 : 10명(정책복지위원, 학계 전문가, 도 보건정책과 등)

- 집행기관 최종 의견수렴 및 비용추계서 작성(10.12)

- 도의회 입법팀 검토 및 협의(10.12)

- 조례 제정 공청회(11. 9)

• 참석인원 : 50명(주제발표 : 김양희 의원, 지정토론 : 학계 전문가 3명)

- 입법예고(11.13 ~ 12. 2)

나. 조례 제정 현황

○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

(광역 6, 기초 19)

※ 광역자치단체 : 광주(2009-07-15), 인천(2009-07-27), 충남(2010-12-30),
제주(2011-01-18), 부산(2012-02-12), 경기도(2012-05-11)

- 광역시·도 중 부산과 제주도는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조례와 응급의료지원조례가 통합되어 있음.

다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매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,
- 심장질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홍보, 사용방법 교육 및 관리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포함하였으며,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(시행일 2012.8.5) 및 동법 시행령 제7조(개정 2012.8.3) 개정에 따라 종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위원자격 조항을 변경하였고,

<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내용 및 위원자격 변경 내용>

	현 행	변 경
심의 내용	1.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 차별 실시계획 2.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3.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 과 및 활용 4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	1. 제3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 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. 응급의료를 위한 재정의 사용 3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.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위원 자격	1.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. 『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.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.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에 관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.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6. 기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	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. (현행과 같음)

- 부칙 제2조에 “다른 조례의 폐지” 조항을 명시하여 종전의 「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로 통합하여 조례 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